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 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10조)
-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4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18조)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31조)
-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안 제32조~제34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 ~ 2026. 10. 2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1월 중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범용(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 유무,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건축

물, 환경, 서비스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건축물과 주변 환경을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등의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6.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것
5. 사용 목적에 맞는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

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기와 연계하여 5년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 관리와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 광역계획 및 「파주시 경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과 연계하고, 제19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지역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파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과 기간을 함께 게재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조성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 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기본 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 계획

3. 사업 시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 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공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자

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반영과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범용디자인

제11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주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용디자인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용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용디자인의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파주시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하여는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범용디자인 사전 점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범용디자인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 사업
2.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②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제 13조제6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제1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하게 배치

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사적(私的)공간을 제외한 공간은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확보할 것

4. 시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 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4. 관계 기관의 범죄예방 진단 등에 따라 지정된 우범지역, 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 시행하는 환경디자인 사업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 관련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공공시설물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5. 별표 2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의 사항

8.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 사항

9.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문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의 단순 보수·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 대상 중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또는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공공디자인 업무 및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명

2.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3. 공공디자인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를 심의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이 회피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제1분과위원회(이하 “제1분과위원회”라 한다): 제19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2. 공공디자인 제2분과위원회(이하 “제2분과위원회”라 한다): 「과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분과위원회: 「과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광고물 분과위원회의는 시의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한 것으로 본다.

⑦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6조(심의 및 자문 신청)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 및 자문 절차) ① 시장은 심의·자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자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자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자문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심의·자문 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으며, 서류 또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두 차례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 준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

제3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을 진흥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연구소 등 학술 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 등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 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4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와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9조”로 하며, 제20조제5항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9조”로 한다.

②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9조”로 한다.

③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4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로 한다.

소관 부서		도시계획과 ☎ 940-5371
입안자	도시 계획 과 장	이 학 현
	도시디자인팀장	강 미 정
	담 당 자	김 민 정

[별표 1]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공공시설물(제19조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 심미성, 편의성,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공공공간

분 류	세 부 항 목	기 준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썸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 심의: 10억 이상 · 자문: 3억 이상 · 협의: 3억 미만
가로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 심의: 10억 이상 · 자문: 3억 이상 · 협의: 3억 미만

2. 도시기반시설물

분 류	세 부 항 목	기 준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 심의: 10억 이상 · 자문: 3억 이상 · 협의: 3억 미만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교통기반 시설물	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3. 가로시설물

분 류	세 부 항 목	기 준
대중교통 시설물	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중앙분리대 마. 주차관련 시설물 바. 교통량 검지기 등	· 협의 대상 ※ 여러 종류의 시설물 통합 설치 심의대상에 포함
보행안전 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울타리(펜스) 다. 가드레일 라. 방호울타리 마. 가로등 바. 보행유도등 사. 공원등 아. 배수구덮개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 나. 피걸러(파고라)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정보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안내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 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4. 공공매체 및 용품

분 류	세 부 항 목	기 준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 협의 대상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 자문 : 5천만원 이상 · 협의 : 5천만원 미만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 자문 : 5천만원 이상 · 협의 : 5천만원 미만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 자문 : 신규 개발 · 협의 : 부분 변경/추가 개발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제작)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 협의 대상

※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용대상)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 경관심의 대상 시설물 및 표준디자인(경기도, 파주시) 적용 시설물은 제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 협의 대상의 개별 시설(매체 등)이 심의·자문 대상의 부속시설일 경우 심의·자문 대상

[별표 2]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등 사업(제19조 관련)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 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 해소	성별, 인종, 장애 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 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 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 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 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 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 설 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범용 디자인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 설 물	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	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골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개정 2023. 3.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제목개정 2023. 3. 21.]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

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

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 2024. 2. 8.] [조례 제2045호, 2024. 2. 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공공시설물 및 파주시민이 생활하는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및 이용환경을 디자인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조례”라 한다)의 별표에 해당하는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2.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시민이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진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

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

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 외에도 세부 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공공시설물의 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
 - 4.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 5.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을 「과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과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시행 2022. 2. 11.] [조례 제1796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미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과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

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시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개정 2022.2.11>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은 「과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2.11>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방안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인증시스템 구축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연구 및 디자인 개발
6. 제8조에 따른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파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방범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설치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7조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2.2.11>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3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청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당 등의 발생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과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2.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현행 조례에 따라 매년 편성 중인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전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신규 재정 부담은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장 이학현 도시디자인팀장 강미정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24. 11. 7.] [조례 제2148호, 2024. 11.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파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6. 3.>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이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 시가 출자

· 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등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

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

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 등”이라 한다)·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시범사업 등·공모전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6. 3.>
- ④ 시범사업 등·공모전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2024. 6. 3.>

제3장 (삭제 2019.12.27.)

제4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3.>

1.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옥외광고, 조명, 색채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4.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업무 담당 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19. 12. 27., 2024. 6. 3.>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
항

5.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협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 제20조에 따른 심의사항

7.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8.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

는 자문 사항

9.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10.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문 사항

11.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제10호에서 이동 2019.12.27)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또는 서면개최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또는 서면개최한다.<개정 2024. 6. 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디자인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22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6. 3.>

1. 공공디자인 제1분과위원회(이하 “제1분과”라 한다):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2. 공공디자인 제2분과위원회(이하 “제2분과”라 한다): 「과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3. 광고물 분과위원회: 「과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의
4. 제17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제1분과와 제2분과가 순번제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은 옥외광고물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신설 2024. 6. 3.>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 또는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제2항에서 이동<2024. 6. 3.>

④ 분과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2024. 6. 3.>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

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2024. 6. 3.>

- 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의결 및 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5항에서 이동<2024. 6. 3.>

- ⑦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회의는 제20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2024. 6. 3.>

[제목개정 2024. 6. 3.]

제23조(심의 및 자문기준 등) ① 제17조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24. 6. 3.>

- ②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2.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로 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55호)(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10.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기한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으로 본다.

부칙 (2024. 6. 3.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8호)(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4. 11. 7.>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 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쉼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파주시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49			
정 책 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김민정	전화번호	031-940-53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9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계획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9조(분과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③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성별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table><tr><td></td><td>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td><td>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하 생략></td><td></td></tr></table>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하 생략>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하 생략>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6년 10월 6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계획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49			
정 책 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김민정	전화번호	031-940-537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u>이 경우에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 <이하 생략>	☐ 수용 ☒ 일부수용 ☐ 불수용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u>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이하 생략>
---	--	---	--

2026년 09월 30일

도시계획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도시계획과-16331(2026. 9. 28.)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51	도시계획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원안동의

-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끝.

감 사

주부관	윤수진	감사2담당	이선	감사관	진결 2026. 9. 28. 유대송
협조자					
시행	감사관-11629	(2026. 9. 28.)	접수	도시계획과-16382	(2026. 9. 29.)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1, 감사관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6840	팩스번호	031-940-4099	/ yoon56@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5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윤수진
주 관 부 서	도시계획과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김민정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9. 28.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전부개정안)

1. 도시계획과-16332(2026. 9. 28.)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도시계획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 산 법 무 과 장

주무관	권설원	규제개혁통계	2026. 9. 28.
		팀장	김선정
협조자		예산법무과장	이재연
시행	예산법무과-17854	(2026. 9. 28.)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전부개정)	
2. 소관 부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달 당	팀장 강미정 담당자 김민정
3. 관련법령 등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10조) ○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4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18조)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31조) ○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안 제32조~제34조)	
5. 심사 의견	<u>○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u>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 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u>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u>.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